

1. 개정이유

공소청보고사무와 관련하여, 기관명칭을 변경하고, 보고사항 중 검사의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며, 보완수사요구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 사항을 추가하는 등 공소청 출범에 따른 직무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검찰 또는 검찰청으로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공소청으로 개정
- 나. 보고내용 중 검찰 인지, 검찰 직고소·직고발을 전제로 한 내용 삭제
- 다. 보고사항 중 범죄수사·공소유지 부분을 공소청 업무로, 수사지휘권의 행사 부분을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 사항으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법무부령 제 호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검찰보고사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검찰청법 제11조”를 “「공소청법」 제58조”로, “검찰사무보고”를 “공소청사무보고”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상급 공소청”으로 하고, 단서 중 “상급검찰청”을 “상급 공소청”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검찰사무보고”를 “공소청사무보고”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검찰사무보고”를 “공소청사무보고”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을 각각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수사지휘권의 행사”를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수사요청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사 및 공소유지”를 “공소청 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검찰정책”을 “공소청 정책”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단서 중 “검찰사무보고”를 “공소청사무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범죄수사·공소유지·검찰정책 수립·운영”을 “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 인지하거나 고소·고발등을 접수한 때”를 “사법경찰관서등 수사기관에서 인지한 사실 또는 고소·고발등을 접수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수사결과보고서”를 각각 “검토결과보고서”로 하며, 제5항 단서 중 “수사를”을 “검토를”로, “수사결과보고서”를 “검토결과보고서”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및 같은 조 제7항 중 “수사결과보고”를 각각 “검토결과보고”로 한다.

제7조제3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13.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공소청 업무 참고사건” 또는 “공소청 정책 참고사건”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급검찰청”을 “각급 공소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검찰업무”를 “공소청 업무”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검찰청(지청)”을 “○○○○공소청(지청)”으로, “검찰조치”를 “검사조치”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검찰청(지청)”을 “○○○○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

로, “○○○○검찰청(지청)”을 “○○○○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검찰청(지청)”을 “○○○○공소청(지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검찰청(지청)”을 “○○○○공소청(지청)”으로 하고, 제목란 중 “[]범죄수사”를 “[]공소청 업무”로 하며, “[]공소유지”를 삭제하고, “[]검찰정책수립·운영”을 “[]공소청 정책의 수립·운영”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검찰청(지청)”을 “○○○○공소청(지청)”으로 하고, 수사단서란 중 “검찰청(지청)인지”를 삭제하며, “경찰서 인지” 다음에 “기타 수사관서 인지”를 신설하고, “고소, 고발”을 “경찰서 고소, 고발 접수”로 하며, 그 다음에 “기타 수사관서 고소, 고발 접수”를 신설한다.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검찰청(지청)”을 “○○○○공소청(지청)”으로 하고, 제목란 중 “한미행정협정사건 수사결과보고”를 “한미행정협정사건 검토결과보고”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 중 “검찰보고사무규칙”을 “공소청보고사무규칙”으로, “검찰전화”를 “공소청 전화”로 하고, “지방검찰청”을 각각 “지방공소청”으로 하며,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한다.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u>검찰보고사무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검찰청법 제11조</u>의 규정에 의하여 <u>검찰사무보고</u>와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고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고절차) 이 규칙에 의한 보고는 <u>각급검찰청의 장</u>이 <u>상급검찰청의 장</u>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u>상급검찰청의 장</u>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2장 <u>검찰사무보고</u> 제3조(보고대상) ① <u>각급검찰청의 장</u>은 다음의 사건에 관하여 <u>검찰사무보고</u>를 해야 한다. 1. ~ 12. (생략) 13. <u>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u> 참고될 사건	<u>공소청보고사무규칙</u> 제1조(목적) ----- 「<u>공소청법</u>」 <u>제58조</u>----- <u>공소청사무보고</u>----- ----- ----- --. 제2조(보고절차) ----- ---- <u>각급 공소청의 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이 <u>상급 공소청</u>----- -----, ----- -----<u>상급 공소청</u>----- -----. 제2장 <u>공소청사무보고</u> 제3조(보고대상) ① <u>각급 공소청</u>----- <u>공소청사무보고</u>-----. 1. ~ 12. (현행과 같음) 13. <u>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13호에서 “ <u>범죄수사·공소유지 또는 검찰정책의 수립·운영에</u> 참고될 사건”이라 함은 다음의 사건을 말한다.	⑤ ----- <u>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u> -----
1. <u>수사지휘권의 행사</u> 에 현저하게 지장을 초래한 사건	1. <u>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재수사요구·수사요청</u> 등 수사기관과 관련된 검사의 직무수행-----
2. <u>수사 및 공소유지에</u> 있어서 특히 창의를 발휘하거나 연구를 한 결과 좋은 성과를 얻은 사건	2. <u>공소청 업무</u> -----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u>검찰정책</u> 의 결정에 참고될 사건	5. ----- <u>공소청 정책</u> -----
제4조(보고의 종류·절차등) ① (생략)	제4조(보고의 종류·절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생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발생보고서에 의하여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검찰사무보고</u> 대상사건의 발생에 관하여 이미 정보보고를 한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u>공소청사무보고</u> -----
③ 수리보고와 처분보고는 별지	③ -----

제2호서식에 의한 수리·처분 보고서에 의하여 수리 또는 처분시마다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u>검찰에서 인지한 사건 또는 직접 고소·고발을 접수한 사건에</u> 관하여는 발생보고로써 수리보고에 같음한다.	----- ----- ----- --. <단서 삭제>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은 보고사유 발생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u>범죄수사·공소유지·검찰정책수립·운영에</u> 참고될 사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하되, 계속하여 처분보고 및 재판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⑥ ----- ----- ----- <u>공소청 업무 또는 공소청 정책의 수립·운영</u> ----- ----- -----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등) ① 한미행정협정사건에 관하여 <u>검찰청 또는 사법경찰관서에서</u> 인지하거나 <u>고소·고발등을</u> 접수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보고서에 따라 발생보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통보를 받아	제6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보고등) ① ----- -- <u>사법경찰관서등 수사기관에서</u> 인지한 사실 또는 <u>고소·고발등을</u> 접수한 사실을 통보받은 때----- ----- -----

인지한 때에는 사건발생통보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	의 예에 의하여 그 구체적 사유를 보고한 후 그 사유보고일부터 14일이내에 <u>수사결과보고서</u> 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 ----- <u>검토결과보고서</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⑥ 우리나라가 제1차적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의 사안이 경미하여 재판권을 행사할만한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발생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u>수사결과보고</u> 와 처분보고는 이를 생략한다.	⑥----- ----- ----- ----- ----- ----- ----- <u>검토결과보고</u> ----- -----.
③ 제1항의 경우 주한 미합중국 군당국으로부터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발생보고의 예에 의하여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증명내용에 대하여 반증이 있는 때에는 공무집행증명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내에 피의자가 소속한 부대의 법무참모 또는 군법무관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한미행정협정사건 <u>수사결과보고서</u> 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 ----- ----- ----- ----- ----- ----- ----- <u>검토결과보고서</u> ----- -----.	⑦ 우리나라가 전속적으로 재판관할권을 가지는 한미행정협정사건은 사안이 중대하거나 특히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킬만한 사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u>수사결과보고</u> 를 생략하고 그 처분결정에 대한 의견건의서에 종합보고하여야 한다.	⑦----- ----- ----- ----- ----- ----- ----- <u>검토결과보고</u>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⑧ · ⑨ (생 략)	⑧ · ⑨ (현행과 같음)
⑤ 우리나라가 형사재판권을 행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제1항의 보고일부부터 21일이내에 한미행정협정사건 <u>수사결과보고서</u> 에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내에 <u>수사</u> 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보고	⑤----- ----- ----- ----- ----- ----- <u>검토결과보고서</u> ----- ----- ----- ----- <u>검토를</u> -----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 ② (생 략)	제7조(보고서 작성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3조제1항의 보고대상사건에 관한 각종 보고서의 제목은	③----- -----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 12. (생 략) 13. 제3조제1항제13호의 사건 : <u>“범죄수사참고사건”, “공소유 지 참고사건” 또는 “검찰정책 수립참고사건”</u> ④ ~ ⑦ (생 략) ⑧<u>검찰청에서 한미행정협정사 건을 인지하거나 고소·고발등 을 접수한 때에는 피의자의 소 속부대장에게 즉시 통보한 후 발생보고서의 해당란에 통보한 날짜를 적어야 한다.</u> ⑨ (생 략) 제8조(보고대상) <u>각급검찰청</u>의 장 은 다음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 다. 1. ~ 3. (생 략) 4. <u>검찰업무</u>에 참고가 될 사항 이 있는 경우 5. (생 략)	-----. 1. ~ 12. (현행과 같음) 13. ----- <u>“공소청 업무 ----- ----- “공소청 정 책 참고사건”</u> ④ ~ ⑦ (현행과 같음) <삭 제> ⑨ (현행과 같음) 제8조(보고대상) <u>각급 공소청</u>----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공소청 업무</u>----- ----- 5. (현행과 같음)
---	--